

의안번호	2213471
의 퇴 인	성일종의원
회 답 일	2025.12.23.
추 계 번호	25D549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1억 7,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556억 800만원(연평균 511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	25	51	52	53	54	237	47
정책지원관 증원	1,912	3,561	3,648	3,738	3,831	16,690	3,338
통합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	59,600	59,600	59,600	59,600	238,400	47,680
각종 계획 수립	228	—	—	—	—	228	46
각종 위원회 설치	7	12	12	12	12	53	11
합 계	2,172	63,224	63,312	63,403	63,497	255,608	51,122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대전충남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경제과학수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17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충전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하도록 하며, 대전충남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이관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24조(의회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대전충남특별시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27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대전충남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함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5	안 제29조(소방조직에 관한 특례)	-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6	안 제34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특별시장은 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등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39조(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교통 연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43조(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대전충남특별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대전충남특별시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48조(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	의무규정
10	안 제60조~안 제64조(대전충남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등)	-대전충남특별시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대전충남특별시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대전충남특별시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외국어 전용 마을의 조성 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65조~안 제66조(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78조(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80조(기본계획심의회)	-대전충남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경제과학수도 조성 기본계획심의회를 둠	의무규정

14	안 제86조 ~안 제99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등)	-대전충남특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음 -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 투자자 또는 양도·취득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10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105조~ 안 제106조(과학중심도시육성 지원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의 과학기술혁신 유관기관을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정부와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116조 (탄소중립 선도 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특별시장은 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8	안 제117조~ 안 제130조(탄 소중립 도시 중 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특별시장은 탄소중립 도시사업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야 함 -국가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요한 사항,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132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재정 우선 지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주, 인공지능, 드론 등 국방 5대 신산업, 우주 방산부품·기기 산업 등을 대전충남특별시가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0	안 제135조, 안 제136조(항공우 주산업 특화단지 의 지정·지원 등 에 관한 특례 등)	-우주항공청장은 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또는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1	안 제138조, 안 제139조~안 제148조(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등)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대전충남특별시의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운영,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안 제149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153조, 안 제156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등)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이 시급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학연구소기업 간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재량규정
24	안 제16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의무규정
25	안 제163조~안 제165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26	안 제17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특별시장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27	안 제171조(은행 설립에 관한 특례)	-대전충남특별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28	안 제178조, 안 제180조, 안 제181조(농지보전 부담금 특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대전충남특별시는 청년농어업인 연령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9	안 제18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별시의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30	안 제194조(대전충남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대전충남특별시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대상섬의 지정, 도서지역 거주민의 복리향상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의무규정

31	안 제196조(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섬발전 및 글로벌국제해양레저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섬진흥원 분원을 대전충남특별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섬 개발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한 집적단지와 교육시설, 휴양·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32	안 제2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대전충남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량규정
33	안 제226조, 안 제231조, 안 제235조~안 제23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등)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대도시권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용차량 도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버스 등의 적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4	안 제238조~안 제241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등)	-특별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변경할 수 있고, 대전충남특별시미래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5	안 제242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36	안 제245조(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의료사각지대에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주의과대학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37	안 제247조, 안 제249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등)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하여야 함	의무규정
38	안 제25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지상설치 지원 특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39	안 제251조(문화예술의 진흥)	-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40	안 제252조~안 제254조, 안 제263조, 안 제267조(지역문화진흥거점 조성 등)	-국가는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과 문화도시,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국제적 규모의 공연·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	의무규정
41	안 제280조(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2	안 제282조(대전충남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대전충남특별시에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갯벌관리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43	안 제285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대전충남 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	
2	안 제17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대전충남특별시 이양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양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3	안 제24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	
4	안 제27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	미대상: 대전충남특별시의 부시장 수를 4명으로 하고 있으나, 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부시장, 부지사 수는 각 2명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29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	특별시장 직속 소방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6	안 제34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근무지 변경 공무원에게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39조(국가의 재정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8	안 제43조(통합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0	
9	안 제48조(균형발전 기금 설치·운용)	×	균형발전기금 설치 규모 및 이에 따른 출연금 등의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60조~안 제64조(대전충남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1	안 제65조~안 제66조(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등)	×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2	안 제78조(기본계획의 수립)	0	
13	안 제80조(기본계획 심의회)	0	
14	안 제86조~안 제99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5	안 제100조(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0	
16	안 제105조~안 제106조(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7	안 제116조(탄소중립 선도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0	
18	안 제117조~안 제130조(탄소중립 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9	안 제132조(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 우선 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0	안 제135조, 안 제136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1	안 제138조, 안 제139조~안 148조(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2	안 제149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3	안 제153조, 안 제156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4	안 제16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기업의 수, 감면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25	안 제163조~안 제165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6	안 제17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7	안 제171조(은행 설립에 관한 특례)	×	대전충남특별시가 출자하여 설립할 은행의 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8	안 제178조, 안 제180조, 안 제181조(농지보전부담금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9	안 제18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0	안 제194조(대전충남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0	
31	안 제196조(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대전충남특별시에 설치하게 된 한국섬진흥원의 규모, 사업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2	안 제2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33	안 제226조, 안 제231조, 안 제235조~안 제23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4	안 제238조~안 제241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5	안 제242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6	안 제245조(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7	안 제247조, 안 제249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8	안 제25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지상설치 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9	안 제251조(문화예술의 진흥)	0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0	안 제252조~안 제254조, 안 제263조, 안 제267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1	안 제280조(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2	안 제282조(대전충남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0	
43	안 제285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 및 인력 조정, 예산사업 통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따른 감소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0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비용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세종특별시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평균 운영비용을 준용함
- 안 제24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함
 - 현행법령¹⁾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전충남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하여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충남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현 대전광역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수를 합한 수로 함
 -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증원하면,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은 총 35명임

[표 2] 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단위: 명)

구 분	의원정수	현행 정책지원관 정수	증원 가능 정책지원관 수
대전광역시의회	22	11	11
충청남도의회	48	24	24
계	70	35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의회별 각 정책지원관의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5년 연봉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
-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43조에서는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설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분인 100분의 3을 추가재정소요로 산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안의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원시와 청주시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3을, 국고로 100분의 3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통합재정상 재정 규모에 변동을 미치지 않는 특별교부세분 100분의 3은 추계에서 제외함
 - 추가 재정지원은 통합 다음 해인 2027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8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안 제100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 안 제116조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계획, 안 제251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은 2025년 대전광역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등의 예산 금액을 준용함
 - 제정안의 각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80조에 따른 경제과학수도 조성 기본계획심의회, 안 제19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안 제282조에 따른 갯벌관리위원회의 경우 회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경제과학수도 조성 기본계획심의회는 연간 1회, 그 외 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³⁾을 적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 2026년의 경우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등은 6개월분만을 반영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 비용은 세종특별시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2025년 평균 운영비용 4,90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제정안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500만원 등 향후 5년간 2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 운영	25	51	52	53	54	2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24조)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의 2025년 연간 보수는 7,260만원임

[표 4] 일반임기제 6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6급상당	66,907	1,800	3,900	72,607

주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⁴⁾

주2: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9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월 60,000원)을 적용

주3: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억 1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136억 5,1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한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

[표 5]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5 기준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총 소요 (a×b)						
73	35	2,541	1,301	2,665	2,729	2,794	2,861	13,651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000만원 등 5년간 16억 3,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170	350	360	371	383	1,6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20.5%⁵⁾)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6,700만원 등 5년간 25억 3,200만원으로 예상됨

[표 7]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267	546	559	573	587	2,5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은 2026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8]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174	-	-	-	-	1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관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9억 1,200만원 등 5년간 166억 9,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9]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1,301	2,665	2,729	2,794	2,861	13,651
기관부담금	170	350	360	371	383	1,634
기본경비	267	546	559	573	587	2,532
자산취득비	174	-	-	-	-	174
합 계	1,912	3,561	3,648	3,738	3,831	16,6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추가 재정 지원(안 43조)

- 안 제43조에서는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대전충남특별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에 따르면 2025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 배정액은 각각 1조 494억원, 9,376억원임
- 추가 재정 지원 100분의 6 중 100분의 3은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3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국고 지원분은 매년 596억원씩 5년간 2,384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0] 추가 재정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재정지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전 보통교부세 (a)	충남 보통교부세 (b)	계 (c=a+b)	국고 추가지원 (c×0.03)						
10,494	9,376	19,870	596	-	596	596	596	596	2,384

주: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통합 다음 해인 2027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통합창원시, 청주시의 경우에도 통합 다음 해(통합일 창원시 2010.7.1., 청주시 2014.7.1.)부터 추가 재정 지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각종 계획 수립(안 제78조, 안 제100조, 안 제116조 및 안 제251조)

- 안 제78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안 제100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 안 제116조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계획, 안 제251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2024년 대전광역시와 수립한 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5,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4개 계획 모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과학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 탄소중립 도시계획,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억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전충남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57	-	-	-	-	57
과학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	57	-	-	-	-	57
탄소중립 도시계획	57	-	-	-	-	57
문화예술진흥계획	57	-	-	-	-	57
합 계	228	-	-	-	-	2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각종 위원회 설치(안 제80조, 안 제194조 및 안 제282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민간위원 수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로 가정하고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으로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00만원 등 5년간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당 지급 횟수	경제과학수도 조성 기본계획심의회 (10인×연 1회)	10	10	10	10	10	50
	섬발전심의회 (8인×연 2회)	8	16	16	16	16	72
	갯벌관리위원회 (10인×연 2회)	10	20	20	20	20	90
	소계(a)	28	46	46	46	46	212
회의참석수당(b)		0.25	0.25	0.25	0.25	0.25	0.25
계(a×b)		7	12	12	12	12	53

주1: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의 경우 회의개최횟수를 1/2만 반영

주2: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1억 7,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556억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	25	51	52	53	54	237
정책지원관 증원	1,912	3,561	3,648	3,738	3,831	16,690
통합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	59,600	59,600	59,600	59,600	238,400
각종 계획 수립	228	—	—	—	—	228
각종 위원회 설치	7	12	12	12	12	53
합 계	2,172	63,224	63,312	63,403	63,497	255,6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